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Contents

### 표준계약서 해설요약

1. 저작물 ■ 4
2. 저작자 ■ 4
3. 저작권의 종류 ■ 5
4. 계약의 이해 ■ 6
5.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 7
6. 표준 계약서의 구성요소 ■ 9

### 계약서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14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19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2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29

### 해설서

- I 들어가며 ■ 36  
II 계약의 이해 ■ 38  
III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이해 ■ 43  
IV 표준 계약서의 활용 ■ 48





## 저작물

###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 저작물의 종류 (※ 예시규정이며,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보호됨)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자

### ■ 원칙 : 자연인

-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며, 소재 · 비용 · 아이디어 등을 제공했다고 해서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예외 :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업무상저작물 : 법인 · 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 저작권의 종류

###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 등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음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 상영 ·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전시권 : 미술 ·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사진 · 그림 등을 게시하는 행위, △원저작물을 무단 번역 · 편곡하는 행위 등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4

# 계약의 이해

### ■ 계약의 의의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이 체결되면 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부여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향후 계약이 자신의 권리 ·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결 여부, 계약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함

### ■ 계약서 작성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형식이나 길이 등도 묻지 않음.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상 당사자의 구체적

인 권리 · 의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계약서 해석

- 계약서 해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된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불일치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순차적으로 당해 거래의 관행, 사회적 관습에 따라 보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문구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고 꼼꼼히 작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계약의 효력

-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
- 구속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지 못하고 위반 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됨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 ■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권리가 이전되므로, 기존의 저작재산권자는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며,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됨. 즉, 저작권에 대한 주인이 바뀌게 되므로,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됨

### ■ 저작물 이용허락

- 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허락을 받은 상대방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허락 시 ‘비독점’ 또는 ‘독점’ 여부를 선택해서 허락하는 것이 가능함
-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복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이고,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 ■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구별

-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준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단지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가 되므로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금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반면,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함
-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반면, 이용허락의 경우 여전히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속하게 됨.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저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허락도 불가능한 반면,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저작자는 스스로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모두 가능함

### ■ '계약의 목적' 조항

-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계약의 대상' 조항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저작물의 제호, 종류 등)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규정임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합의함

#### 〈'양도 범위' 조항〉

- 저작권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를 염두하고 있을 경우, 양도 대상인 권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작성 필요

### ■ '양도 / 이용허락 기간' 조항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기간은 해당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 ■ '양도인 · 양수인 / 권리자 · 이용자의 의무' 조항

-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 의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협상 과정을 통하여 열마든지 표준계약서 상 권리 · 의무를 추가하거나 수정 · 변경 할 수 있음

\* 저작권 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 또는 이용허락 금지, 양도 또는 이용허락 비용 지급 등

### ■ '확인 및 보증' 조항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경우,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을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의 저작재산권의 보유, 대상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규정
- 이용허락 계약서의 경우 권리자의 저작재산권 보유, 대상저작물의 법적 무결성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

### ■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

- 해당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되, 계약 변경 여부 혹은 변경 내용 등 관련한 후일의 다툼을 없애기 위하여 서면이라는 방식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음

### ■ '계약의 해제' 조항

-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있어야 하는 바,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가 해제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 가능
- 또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약정과 무관하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 참고적으로,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조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해제권 행사 조항,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제권 행사 조항, 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 등이 있음

### ■ '비용의 부담' 조항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도 할 수 있음

#### ■ '분쟁해결' 조항

- 조정은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은 온라인(adr.copyright.or.kr) 또는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신청 관련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7~108)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

#### ■ '비밀유지' 조항

-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저작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 바,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임

#### ■ '기타 부속합의' 조항

-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계약의 흠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서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대해 흠결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것임
- 부속합의서와 본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당사자의 합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기에 민법으로서 해당 계약서를 해석하다는 원칙 규정

#### ■ '계약 효력 발생일' 조항

- 본문에서 별도로 해당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일이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됨

-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일자는 계약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바,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sup>1)</sup>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양수인의 의무)

-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기타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지급시기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li> <li>- 2차 :</li> <li>- 3차 :</li> </ul>
	정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월 :</li> <li><input type="checkbox"/> 분기 :</li> <li><input type="checkbox"/> 년 :</li> </ul>
	□ 기타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도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1)</sup>작성권

###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 야 한다.

#### 제6조 (양수인의 의무)

-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원
		정기지급	(예 : 월)	-----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년 -----월 -----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기타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양도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1)</sup>작성권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 원
		정기지급	(예 : 월) ----- 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 %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년 -----월 -----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이용료 \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돋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

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권리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sup>1)</sup>작성권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기타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지급시기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li> <li>- 2차 :</li> <li>- 3차 :</li> </ul>
	정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월 :</li> <li><input type="checkbox"/> 분기 :</li> <li><input type="checkbox"/> 년 :</li> </ul>
	□ 기타	

-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거부의지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11조 (분쟁해결)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권리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I 들어가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취득하게 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을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해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달리 개인에게 전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저작인격권으로서 규정한다.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중에서 인격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저작권이 유일하다. 저작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일관한다. 18세기 말 저작권 개념이 유럽국가에서 확대되던 시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저작물이란 머리로 낳은 자식(brain child)이라는 생각과 프랑스 혁명기의 천부인권론, 자연권 사상 등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쳐서 ‘저작인격권’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다. ‘문화의 향상발전’은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1조).<sup>1)</sup>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란 일견 생각하면 상충하는 개념이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면 이용자들의 이용에는 지장이 생기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의 확대를 노리면 창작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 보장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을 잡는 기재는 그 시대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정책도 법해석도 달라져왔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향상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새로운 저작물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저작물이 원시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만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도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제46조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格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에 특유한 해석론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특정인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물권과 비슷한 배타적 권리, 즉 준(準)물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민법상 소유권 기타 물권과 같이 양도, 증여,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권리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다발 중에서 일부 권리만을 뽑아내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고, 다발을 이루는 개별 지분권을 다시 나누어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분화한 일부 양도 · 이용허락은, 그러한 양도 · 이용허락의 필요성, 그로 인한 권리관계의 불명확성, 사회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면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sup>2)</sup> 저작권 거래의 이러한 속성은 민법상 소유권 기타 물권과 대비되는 저작재산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설서는 기본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관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이 갖는 의의, 그 계약서의 작성 및 해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2) 中山信弘著/윤선희편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7, 285면.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계약법상, 저작권법상 해설을 각 조문별로 삽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관련 계약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위 네 가지 유형의 표준계약서에서 각 조문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형함으로서 위 네 가지 표준계약서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 계약의 이해

### 1. 계약의 의의 및 성립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일방 당사자는 권리가 생기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생긴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 한 당사자가 계약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계약의 체결 과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사표시를 맞추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고, 계약은 그러한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 낸 합치된 의사표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당사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내용결정의 자유),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방식의 자유). 이것 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을 이루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이에 부수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계약의 자유’가 형식화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 등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된 계약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sup>3)</sup>는 로마의 법률격언은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구속되기로 합의했다면 당사자는 이를 지키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계약 위반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일방 당사자에는 권리가 부여되고 타방 당사자는 의무가 부담되게 되므로, 당사자는 향후 계약이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결 여부, 계약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계약은 통상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한쪽 당사자의 계약의 조건 등을 정하여 계약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청약’이고, 이에 대응하여 조건을 검토하여 이를 받아들인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따라서 승낙과 청약은 서로 같은 내용이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본다.

거래 현실에서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모두 정하여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청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외형상으로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 내용을 정하여 청약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4)</sup> 일방에 유리한 청약이라도 이를 승낙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사자는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각자 유·불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3) Agreements must be observed.라는 뜻임.

4) 양창수, 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0, 26 내지 48면 참조.

하여 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지 여부를 협상해야 한다. 또한 협의된 내용을 문구화하여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남겨두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협상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등 거래에서는 업계에서 발생한 표준적인 계약서를 중심으로 일부 수정·변경·추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왔다.

## 2. 계약서의 작성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형식을 묻지 않는다.<sup>5)</sup> 서면의 제목이 ‘계약서’가 아니어도, 아니 제목이 없어도 계약서로서 유효할 수 있다. 서면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서면의 내용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sup>6)</sup> 이론상으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계약으로는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확실한 증명방법은 서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계약서는 대체로 ① 제목, ② 계약 체결일 및 당사자, ③ 전문, ④ 본문으

5) 영화계에서는 충무로 다방에서 제작자와 지방행업자 사이에 담뱃갑 안 은박지에 모나미 불펜으로 몇 자 적은 것이 계약서의 효시라는 농담을 한다. 과거에 모든 거래가 업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 금융자본이 영화계로 유입되면서 계약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공연업계에서는 영화계보다도 더 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발을 붙였다. 업계의 산업화와 계약 문화는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6) 민법상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증여계약’을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증여’를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구두의 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라 언제든지 당사자가 구두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약속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증여를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증여(gift)’는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영미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요소로 consideration이 필요하다고 하고, 증여에는 consideration이 결여되었으므로 구속력(binding force)가 없다는 것이다. consideration은 일본의 번역을 따라 약인(約因)이라고도 하나 그 의미는 ‘give and take’로 이해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제11조).

로 구성된다.<sup>7)</sup> 영미권에서 교육 받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계약서의 구성을 영문 계약서 방식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과거에는 영문계약서의 경우에도 생소한 전문용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장황한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가급적 간결한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④ 본문’은 계약의 목적물, 가격, 이행 기간 등 주된 계약 내용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규정과 계약의 발효 및 종료, 해제, 계약의 양도 및 수정, 비밀유지, 분쟁해결방법 등 일반조항 내지 계약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한다면 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네 가지 표준계약서의 본문을 해설하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① 제목’에서는 그 제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어떠한 명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제목은 그 계약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서’, ‘합의서’ 등의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계약을 특정하거나 혹은 내용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② 계약 체결일 및 당사자’ 중 계약체결일은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별도로 계약서 내에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랬다면 마땅히 당해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는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해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는 기재되어 있는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계약의 특성상 효력발생시기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는 당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자로서 당사자의 이름(상호) 외에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재사항 즉, 주소 이외에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회사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본문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는 통상적으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예술가’와 ‘극장’ 혹은 ‘창작자’와 ‘이용자’ 등의 약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③ 전문’계약서 작성의 경위나 당사자의 지위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계약의

7) 이하 내용은 강은경, 『From contract to Concerthall』, 도서출판 이클라세, 2997, 83 내지 94면 참조

성립이나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고, 계약서 본문을 해석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정도이다. 전문은 영문계약서에서 보이는 형식으로서 우리 계약서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근래에는 계약서 간소화의 영향으로 생략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는 계약서는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사를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따라 합치시키고 그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차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처럼 정형화된 거래양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달리 협상과정을 통해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목적물 및 당사자, 체결일자, 목적물의 가액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표준양식’으로서의 견본계약서(Sample Contract)가 존재하는데, 실무상 이러한 견본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특약사항 정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sup>8)</sup>

### 3. 계약서의 해석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는 이와 같은 합치된 의사표시를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수단이 반드시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쌍방이 일치한 의미로 동일한 표현수단을 사용해서 작성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작성된 계약서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계약서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내심의 의사가 합치된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불일치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순차적으로 당해 거래의 관행, 사회적 관습에 따라 보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문구의 사용이 지양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꼼꼼히 작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8) 강은경, 전계서, 199면 참조

### III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이해

### 1.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또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호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ς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저작재산권은 이와 같이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한부의 분리양도도 가능하고, 장소적인 제한을 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즉, 특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국내에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2014. 10. 1.부터 2019. 10. 1.까지 양도한다.’라는 식으로 지역, 기한을 한정하는 내용의 양도계약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는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권리변동에 관계한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 양수인과 사이에서 양도등록을 하기 전에 또다른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이를 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한 경우, 최초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양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양수를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에게 양수받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한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후 제3자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3자에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 3항). 저작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데 있지만, 복잡다기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저작자 스스로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국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사업자 등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고 한다.<sup>9)</sup>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채권 자격 지위에 있다. 또한 이용허락에는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이용허락을 하는 관계이고,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계약 상대방에게도 이용허락을 하는 관계라고 표현된다.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자와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저작재산권을 중첩적으로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한 후에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만일 양도행위가 이용허락계약상 저촉된다면 이용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독점적 이용허락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의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다.

---

9)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2011, 246면, 247면

### 3.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준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단지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자이므로 무단으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직접 금지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2중 양수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반면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이용자는 아무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이용허락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독자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금지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계약의 취지에 따라 자신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3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함에도 저작재산권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용허락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같이 독점적 이용자의 취약한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학자들 간에 반론이 있었다. 저작재산권자가 독점적 이용자의 지위 보호에 무관심한 경우가 예상되고 (시장 환경의 변화로 저작권이용료가 상승한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기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새로운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비용을 투자한 독점적 이용자의 보호를 포기한다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점적 이용자가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sup>10)</sup>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정지청구권을 행사하는

10)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한다는 뜻은 이러하다.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상대방인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소리바다’ 가치분 사건의 항소심이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들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정지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이어서 같은 사건의 상고심이 항소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결국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자신의 지위에서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은 결국 저작자가 아닌 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더욱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와 기간을 한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독점적인 이용허락권을 부여한 것과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하여 저작권 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 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라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되었다는 뜻은 저작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고 계약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뜻, 계약 상대방은 이용허락을 받은데 불과하다는 뜻이다.<sup>11)</sup>

---

11)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642면 참조

#### 4. 저작재산권 계약의 규제 필요성

저작권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을 따르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 해석론이 저작재산권 계약에서도 항상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은 두 가지 점을 기초로 한다.<sup>12)</sup>

먼저,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사적 자치, 즉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의 지위가 원천적으로 불균형한 경우 형식적 논의에 흐르기 쉽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저작물의 가장 왕성한 이용주체는 유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대 권력이기가 십상이다. 이에 비하여 외관상 저작(권)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주체이지만 실제로 유통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 상대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점이다.

둘째,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 그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은 경우보다는 장래에 그 시장가치가 폭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래 수익의 예측 곤란성이 저작물의 속성이라면, 이미 저작권을 인도한 저작(권)자에게 후발적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혹은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찌꺼기(residue)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이다.

저작권법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취급을 하여 저작권 양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거나, 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인정하는 ‘추급권’이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

12)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330,331면 참조.

## IV

## 표준 계약서의 활용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것인지, 당해 조항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향후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없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면, 향후 계약을 이행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칫 당사자들에게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시된 계약서 유형은 ①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②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③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④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이다.

##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 제목 자체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내지 ‘합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도 족하고, 반드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은 당해 계약서의 성격을 밝힌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양도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계약서의 구속을 받는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우 그 종류와 본점소재지, 대표자(대표이사) 등을 통해 그 특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sup>13)</sup> 최근에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보다는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하는 추세이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앞부분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서 마지막에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를 계약서 앞부분에서 특정하든, 마지막에서 특정하든 계약서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13) 강은경, 전개서, 88면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계약서에는 그 계약 체결의 목적조항이 삽입된다. 목적조항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조항의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조항이다.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상속은 저작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저작인격권은 계속 최초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 만일 창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현재의 권리자 이외에 저작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그 저작물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별은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와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권리’는 저작권 거래의 대상으로서 복제권(법 제16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전시권(법 제19조), 배포권(법 제20조), 대여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1조) 등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고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한다(제14조). ‘일신전속성’이란 비양도성 및 비상속성을 의미하다. 저작인격권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계약에서는 일단 고려할 바가 크지 않다.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설명한다.

## (1) 복제권

###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22호).

“copyright”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저작권은 복제권에서 출발하였다.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수도 있고, 권원 없는 자의 복제를 금지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복제’란 기계적, 전자적, 화학적 방법에 의한 것은 물론 손으로 베끼는 것도 포함되며, 논문 등의 인쇄, 회화나 조각의 사진촬영, 음악저작물에 대한 음반 취입 등도 복제에 해당된다.<sup>14)</sup>

14) 오승종, 저작권법, 2012, 415면

## (2) 공연권

###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의 송신이 공연에 포함되므로, 음식점·백화점에서의 고객용 방송, 기업의 사내 방송은 공연에 해당할 것이나, 동일건물에 여러 점포가 입점하여 각 입주자가 건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관계에서 송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연이 아니라 방송이 된다. 한편 호텔에서 객실에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게 된다.<sup>15)</sup>

## (3) 공중송신권

###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10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

15)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2010, 259면; 이해완,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10면.

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법 제2조 제11호).

방송은 ‘수신의 동시성’을 전제한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었고, 2004년 개정으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었다. 전송권은 인터넷 ‘매체의 쌍방향성’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은 2006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수신의 동시성 + 쌍방향성’을 고려한 개념이다.<sup>16)</sup>

통신방법이 어떠하든, 공중이 저작물에 어떻게 접근하든 그것이 송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공중송신’에 해당한다. 단, ‘동일인의 접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은 공연에 해당한다.<sup>17)</sup>

#### (4) 전시권

#####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은 전체 저작물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라, 성격상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만 적용되는 권리이다.

#### (5) 배포권

#####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 제23호).

16) 이해완,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43면.

17) 최경수, 전계서, 270면.

## (6) 대여권

###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7)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 혹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국의 드라마 및 영화를 번역하고 더빙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포함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저작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의 대상에 편입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및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5조 제2항). 저작물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를 염

두하고 있을 경우 양도 대상인 권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전부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한다.

####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저작권 양도 기간의 기산점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기간을 한정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 및 제6조는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 의무를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협상 과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본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에서 권리 · 의무를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는 당사자 중 양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이자 양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 제2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양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도등록 자체가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만일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동일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최초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는 제2양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제2양수인이 먼저 양도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오히려 제2양수인이 최초 양수인에게 저작재산권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2항과 같이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등록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제53조 내지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에 기재하여 행한다(저작권법 제5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니거나 등록 신청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고,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3항).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상 지정된 서식인 저작권 등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저작물의 복제물과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저작권 등록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02-2660-0001~5)에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제5조 제3항은 법률상 당연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양도 계약서이고,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후에는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적으로 제3항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제3항과 관련하여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양수인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 대상저작물과 전부 혹은 일부가 동일한 저작물의 창작을 금지하거나, 나아가 대상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의 창작을 금지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저작자가 양도후 거의 유사한 작품을 만들거나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 그러한 계약은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와 충돌하는 규정으로서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이해된다.

##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 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 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table border="1"> <tr> <td>정기지급</td><td>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td></tr> <tr> <td>▣ 기타</td><td></td></tr> </table>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 기타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계약서 제6조는 당사자 중 양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음에 이에 상응하는 합의된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방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시금 혹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게 될 것이다.

제6조 제2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 제2항과 문제되는 저작인격권은 동일성유지권으로 볼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은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내용이나 형식, 제호 등도 모두 저작자가 선택한 표현방식이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저작물의 변형을 예정하므로, 그 성격상 동일성유지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자가 대상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에는 각 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원저작물의 내용·형식에 대한 개변까지 동의한다는 의사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혀락을 받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에 수반되는 원저작물의 변경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sup>18)</sup>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수반되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준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이와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에 관한 통설적 입장과 법원의 판결례를 고려한 규정이다.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일성유지권’ 주장을 자제하기로 양해하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본 표준계약서 제7조는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을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의 저작재산권의 보유, 대상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7조 제1호는 양도인에게 양도의 목적인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있다는 점을 보증해 준 것이고, 제2호는 대상저작물을 법적으로 무결하여 향후 양수인이 대상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계약서는 양수인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만일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한

18) 정상조편, 전개서, 350면.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자칫 양수인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양수 전에 대상저작물의 이용자가 있거나 질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사실상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에 양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마땅하다. 이에 위 제7조 제3호를 통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와 같이 양수인이 향후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되, 계약 변경 여부 혹은 변경 내용 등 관련한 후일의 다툼을 없애기 위하여 서면이라는 방식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변경의 효력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그 즉시’ 혹은 ‘2015.1.1.부터’ 등 자유롭게 발효시기를 정할 수 있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의 경우라도 해제권의 발생, 행사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르므로, 본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제권이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미리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제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에서 정한 해제권 부여 즉 '약정해제'라고 한다. 당사자의 약정과 무관하게, 민법은 이행지체의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정한 해제권의 부여 즉 '법정해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약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법정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 즉, 약정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별에 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1990. 3. 27. 선고 89다카14110 판결), 해제권자가 선택하여 둘 다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해제권은 크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지체 한 경우와 상대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의 경우 발생한다. 민법은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민법 제544조), 이행 불능의 경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 제546조).

제9조 제1항은 이른바 천재지변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여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사정(causes beyond parties' control)을 의미한다. 계약의 상황마다 '불가항력'의 의미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그 내용

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산품 거래 계약에서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계의 고장, 운송 중 지체, 정부의 규제조치, 전쟁, 천재지변(act of god), 기타 매도인에게 발생한 우발사태’라는 식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나열 한다. ‘불가항력’의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하거나 바로 계약 을 해제하는 등의 처리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는 양도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저작재산 권을 이전하므로 불가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천재지변 으로 은행업무가 마비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정도가 불가항력의 예가 될 것이다. 불가항력의 법률적 효과로서 반드시 계약의 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불가항력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데에 불가항력의 의의가 있다.

제9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흔히 규정하는 해제권 발생의 요건이 다. 본 표준계약서에서 당사자의 권리 · 의무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본 조항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가 그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이행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 능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게 할 어떠한 유인도 없 고,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정을 촉구하지 않고도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한 것이다. 제9조 제2항은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제9조 제3항은 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면 기존의 계약관계는 계약 체결 전으로 소급 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그런데 계약의 해제에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 당사자에게 원상회복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 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1조).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여 종료시키는 것 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마땅히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만일 본 계약이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제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던 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10조 손해배상의 책임은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390조),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와 같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제10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검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액을 계약서에 미리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렇게 위약시에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미리 특정한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이라고 한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④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금 약정 혹은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우선 이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의 배상문제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sup>19)</sup>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귀책사유 즉, 일방의 위약에 고의 과실이 있는가의 문제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를 두고 자루하게 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즉시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약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처리 문제가 대단히 용이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위약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배상액을 감액을 할 수 있다. 국가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92다41719 판결 등).<sup>20)</sup>

한편, 위약금 약정과 구별할 개념으로 ‘위약별’이 있다. ‘위약별’ 약정의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채무불이행자가 상대방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하지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위약별 약정으로 위약자에게 훨씬 더 불리한 정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으

19) 양창수, 김재형, 전계서, 454 내지 455면

20) 김형배 외 2, 『제11판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12, 967면.

로 법원은, 위약별 약정을 통하여 일방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과도할 경우에는 위약별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sup>21)</sup>에 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고자 한다(대법원 2002. 4. 23. 2000다56976 판결 등).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양도인 혹은 양수인 일방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본 표준계약서와 같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재판에 의할 것인가,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에 의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재판이외의 분쟁해결 방식,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up>22)</sup>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상당수를 법원 내 조정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보내 처리를 위촉하기도 한다. 법원이 중심이 된 ADR을 법원연계형 ADR (Court-Annexed ADR)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처럼 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사회에서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 ADR은 판결이 아닌 방식, 즉 조정, 알선, 화해, 중재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분쟁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엄격한 형식에 얹히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쌍방 당사자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분쟁의 종결도 원활하지만 무엇보다

2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이다. 민법 제103조는 조문제목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2) 대체 분쟁해결 방식,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등으로 번역한다.

당사자 사이에 정서적으로 긴장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ADR의 장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문화·예술 영역과 증거법칙에 의한 이성적 판단을 전제하는 재판작용과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중 1차적으로 소송 외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 중에서도 조정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단,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 즉 중재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에 의하여 사건이 단심으로 종결되고, 더 이상 법원 등에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위 제12조 제2항은 이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토지관할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지만, 당사자는 1심 토지관할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바, 본 조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내지 “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의관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은 온라인(adr.copyright.or.kr)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서식에 조정 신청의 취지와 신청 원인을 작성하여 날인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 가능하다. 조정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7~108)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대상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제14조 (기타 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계약에 흠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만일 계약에 흠결이 있는 사항을 알았더라면 규정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가정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이른바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서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대해 흠결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본 표준계약서 제14조는 본 계약의 흠결 및 공백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지만, 본 계약과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부속합의서 체결 가능성과 부속합의서의 효력 순위를 밝히고 있다. 다만,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는 것으로서 변화된 사정에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할 것이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론적인 규정이다.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이므로 마땅히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으로서 본 계약서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본문에서 별도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일자는 계약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바,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sup>23)</sup>

##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에서 설명하였듯이, 제호 자체는 크게 의미 있지 않지만 당해 계약서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본 표준계약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호를 정하고 있다.

양도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23) 강은경, 전개서 87 내지 88면

본 계약의 구속력을 받는 당사자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에서의 당사자 기재 부분을 참고한다.<sup>24)</sup>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계약서에는 그 계약 체결의 목적조항이 삽입된다. 목적조항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조항의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조항이다.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현재의 권리자인 양도인 이외에 저작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그 저작물을

24) 강은경, 전계서, 88면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별’은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와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의미한다.

지분권별·이용행태별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각 지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그 지분권을 다시 이용목적에 따라 나누어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작가의 특정소설에 대하여 영화제작사가 영상화권의 양도를 희망하고, 뮤지컬제작사가 뮤지컬제작권의 양도를 희망한다면, 소설작가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중 영상화권을 영화사에 뮤지컬제작권을 공연제작사에 각각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북경의 공연제작사가 그 소설에 심취하여 공연권의 양도를 구한다면 소설작가는 중국을 지역적 범위로 하여, 5년을 한도로 공연물을 제작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사가 영상화권의 양도를 구한다면 언어를 영어로 하는 영화에 한하여 3년을 기한으로 영상화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북미지역에서의 극장개봉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5년을 한도로 영상화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권리의 양도방식, 양도되는 권리의 내용은 다종다양하므로 서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 및 이용 형태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본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본 계약의 대상은 제2조에 표시한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로 제3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저작권 양도 기간의 기산점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기간을 한정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 제5조 (양도인의 의무)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한다.
-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 및 제6조는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 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본 표준계약서에 있는 권리 · 의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함에 필요한 의무를 각 규정한 조항이다. 제1항은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이자 양도인의 핵심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양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인데,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양수로 인한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 양수인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제2항은 양수인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5조의 설명을 참고한다.

제5조 제3항은 당연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 계약서이고,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일부 양도한 후에는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사실을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 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 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계약서 제6조는 당사자 중 양수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제1항은 양수받은 저작재산권에 상응하는 합의된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2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개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및 편집을 규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6조의 설명을 참고한다.<sup>25)</sup>

###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본 표준계약서 제7조는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을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의 저작재산권의 보유 현황, 대상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등을 확인하고 보증해주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위 제7조 제1호는 양도인에게 양도의 목적인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 및 보증해 준 것이고, 제2호는 대상저작물은 법적으로 무결하여 향후 양수인이 대상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타인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3호는 당연한 규정이다.

###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 제8조를 규정하고

25) 정상조편, 전개서, 350면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8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민법상 해제권의 기본 법리를 기반으로 작성된 조항이다. 본 표준계약서 제9조 제1항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항은 민법의 규정과 같이,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위 제9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9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10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주의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제10조의 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위약을 한 경우 특정한 금액을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혹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의 배상문제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0조의 설명을 참조한다.<sup>26)</sup>

##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양도인 혹은 양수인 일방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약정 할 수 있으나,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본 표준계약서와 같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26) 양창수, 김재형, 전계서, 454 내지 455면; 김형배 외 2, 전계서 967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재판 외의 방법 즉,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위 제12조 제2항은 이 조항이 없어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토지관할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지만, 당사자는 1심 토지관할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바, 본 조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내지 “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의관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내용을 참조한다.

###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그 대상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대한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제14조 (기타부속합의)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본 표준계약서 제14조는 본 계약의 흡결 및 공백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가 상충하는 경우의 효력 순위를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4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일반론적인 규정이다.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이므로 당연히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으로서 본 계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본문에서 별도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sup>27)</sup>

##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 제목 자체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내지 ‘합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도 족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의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라고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호는 당해 계약서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강은경, 전개서 87 내지 88면

저작권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계약의 구속을 받는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우 그 종류와 본점소재지, 대표자(대표이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sup>28)</sup>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의 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말미에 기재할 수도 있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계약서에는 그 계약 체결의 목적조항이 삽입된다. 목적조항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조항의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28) 강은경, 전계서 88면

-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락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조항이다.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현재의 저작권자 이외에 저작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그 저작물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별’은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와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의미한다.

이 계약서는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이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배타적 이용허락의 차이에 대하여는 Ⅲ.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 권리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지분권별·이용행태별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누어 각 일부의 권리만을 이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sup>29)</sup>

우선 지분권별·이용행태별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각 지분권을 이용허락할 수도 있고 그 지분권을 다시 이용목적에 따라 나누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작가의 특정소설에 대하여 영화제작사가 영상화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희망하고, 뮤지컬제작사가 뮤지컬제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희망한다면,

29) 이하 제2조의 설명은 정상조, 전계서, 628 내지 632면 참조

소설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화권을 영화사에, 뮤지컬제작권을 공연제작사에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북경의 공연제작사가 그 소설에 심취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공연제작권의 이용허락을 구한다면 소설작가는 중국을 지역적 범위로 하여, 5년을 한도로 공연물을 제작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할리웃의 영화제작사가 영상화권의 이용허락을 구한다면 언어를 영어로 하는 영화에 한하여 3년을 기한으로 영상화를 독점 허락 할 수도 있고, 북미지역에서의 극장개봉만을 조건으로 5년을 한도로 영상화를 독점허락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권리의 이용허락 방식, 이용허락 되는 권리의 내용은 다종다양하므로 서로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이 지난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  
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  
음날부터 기산한다.

이용허락기간의 기산점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통상 이용허락 기간의 기산점은 이용료(license  
fee)의 지급과 연동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5조 제2항의 기일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  
에서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  
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  
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4조 및 제5조는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 의무를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본 표준계약서에 있는 권리 · 의무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4조는 당사자 중 권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이자 권리자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제4조 제2항은 권리자의 협조의무이다.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권리자는 이용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의무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저작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제4조 제2항에서는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이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를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고,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근거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에 기재하여 행하고(저작권법 제5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니거나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고,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내지 3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5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 기타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이용료 \_\_\_\_\_원 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혼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는 당사자 중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을 합의한 이용방법 및 조건, 기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에 상응하는 합의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 방법은 일시금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한 바, 본 표준계약서는 지급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위 제5조 제3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전술하였듯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의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성명 표시는 저작권법상의 의무이므로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성명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양도,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표시는 저작권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을 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제4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6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서에서도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sup>30)</sup>

---

30) 정상조편, 전개서, 350면

##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 표준계약서 제6조는 권리자 및 이용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보증한 내용으로서 제1항은 권리자의, 제2항은 이용자의 확인 및 보증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위해서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1항 제2호는 대상저작물이 법적으로 무결하여 향후 이용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이용자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인 권리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일 뿐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대상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을 주장할 상대는 오로지 권리자라는 데서 비롯된 규정이다. 즉,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부여하기 전에 혹은 그 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독점적 이용허락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채권적 권리자인 독점적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확인 및 보증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제2항은 이용자의 확인 및 보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은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용허락 관계는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채권적 관계이다.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에 불과한 이용자에게는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재이용허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2항 제1호와 같이 이용허락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3자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대상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책임이 추궁될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대상저작물의 가치가 동시에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8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민법상 해제권의 기본 법리를 기반으로 작성된 조항이다. 본 표준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항은 민법의 규정과 같이,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위 제8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9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9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주의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제9조의 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위약을 한 경우 특정한 금액을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혹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의 배상문제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0조의 설명을 참조한다.<sup>31)</sup>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양도인 혹은 양수인 일방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약정 할 수 있으나,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본 표준계약서와 같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재판 외의 방법 즉,

31) 양창수, 김재형, 전계서, 454 내지 455면; 김형배 외 2, 전계서, 967면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위 제11조 제2항은 이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토지관할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지만, 당사자는 1심 토지관할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바, 본 조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내지 “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의관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그 대상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대한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본 표준계약서 제13조는 본 계약의 흡결 및 공백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가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부속합의서 체결 가능성과 부속합의서와의 효력 순위를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4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일반론적인 규정이다.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이므로 당연히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으로서 본 계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통상 이용허락의 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용허락의 기간일, 즉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본문에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일”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기간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에서 별도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sup>32)</sup>

##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 제목 자체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내지 ‘합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도 족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의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라고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호는 당해 계약서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2) 강은경, 전개서, 87 내지 88면

저작권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계약의 구속을 받는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우 그 종류와 본점소재지, 대표자(대표이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sup>33)</sup>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의 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말미에 기재할 수도 있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계약서에는 그 계약 체결의 목적조항이 삽입된다. 목적조항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조항의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33) 강은경, 전개서 88면

-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본 조항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는 조항이다.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현재의 권리자 이외에 저작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그 저작물을 특정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별’은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와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의미한다.

이 계약서는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이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모두 채권적 계약이다. 즉,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만 이용허락권을 주는 계약이고,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권리자가 이미 이용을 허락한 자 외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이용허락권을 주는 계약이다.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 권리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지분권별·이용행태별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누어 각 일부의 권리만을 이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sup>34)</sup>

실제로 저작물의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34) 이하 제2조의 설명은 정상조, 전계서, 628 내지 632면 참조

보이지는 않는다. 저작권 사업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굳이 경쟁 사업자가 있는 영역에 진입하여 무리하게 경쟁을 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용허락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권리의 이용허락 방식, 이용허락 되는 권리의 내용은 다종다양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하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이 지난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  
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  
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용허락기간의 기산점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통상 이용허락 기간의 기산점은 이용료(license  
fee)의 지급과 연동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5조 제2항의 기일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  
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  
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  
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  
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  
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4조 및 제5조는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 의무를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본 표준계약서에 있는 권리 · 의무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4조는 당사자 중 권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본 표준계약서의 목적이자 권리자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제4조 제2항은 권리자의 협조의무이다.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권리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의무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저작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이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를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고,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추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용자의 지위를 보장받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저작권자는 대상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에 기재하여 행하고(저작권법 제5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니거나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고,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내지 3항).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5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정액	일시금 분할	_____ 원
		정기지급	(예 : 월) _____ 원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_____ %
	기타		

지급시기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분할	- 1차 : - 2차 : - 3차 :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기타	

-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혀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5조는 당사자 중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을 합의한 이용방법 및 조건, 기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에 상응하는 합의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 방법은 일시금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한 바, 본 표준계약서는 지급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위 제5조 제4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의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성명표시는 저작권법상의 의무이므로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성명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양도, 상속받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표시는 저작권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을 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제5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의 제6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서에서도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sup>35)</sup>

---

35) 정상조편, 전개서, 350면

##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 표준계약서 제6조는 권리자 및 이용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보증한 내용으로서 제1항은 권리자의, 제2항은 이용자의 확인 및 보증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제2호는 대상저작물은 법적으로 무결하여 향후 이용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3호는 이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삽입된 조항이다. 이용자 외의 제3자에게도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이용자가 당초 예상하였던 대상저작물의 가치 및 대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하도록 한 것이다.

위 제2항은 이용자의 확인 및 보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권리자와 본 계약에 의한 이용자의 지위를 통해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용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인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허락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양도하거나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재이용허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2항 제1호와 같이 이용허락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3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책임이 추궁될 여지도 있고, 대상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대상 저작물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함을 위 제2항 제2호를 통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의 제8조 설명을 참조한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민법상 해제권의 기본 법리를 기반으로 작성된 조항이다. 본 표준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항은 민법의 규정과 같이,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위 제8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9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9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주의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제9조의 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위약을 한 경우 특정한 금액을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혹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의 배상문제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0조의 설명을 참조한다.<sup>36)</sup>

36) 양창수, 김재형, 전계서 454 내지 455면; 김형배 외 2, 전계서, 967면

##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양도인 혹은 양수인 일방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약정 할 수 있으나,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본 표준계약서와 같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재판 외의 방법 즉,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위 제11조 제2항은 이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토지관할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지만, 당사자는 1심 토지관할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바, 본 조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내지 “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토지관할로 한다.”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합의관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2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

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그 대상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대한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본 표준계약서 제13조는 본 계약의 흡결 및 공백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부속합의서가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우선 한다는 규정을 두어 부속합의서 체결 가능성과 부속합의서와의 효력 순위를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4조의 설명을 참조한다.

###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일반론적인 규정이다.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이므로 당연히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으로서 본 계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는 통상 이용허락의 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용허락의 기산일, 즉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본문에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일”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에서 별도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sup>37)</sup>

---

37) 강은경, 전개서, 87 내지 88면

## [참고문헌]

- 강은경(2007), 『From Contract to Concerthall』, 도서출판 이클라세
- 김형배 외 2(2012), 『제11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박영사
-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한울
- 한국수출입은행(2004), 『영문국제계약해석』, 한국수출입은행
- 中山信弘著/윤선희편역(2007), 『저작권법』, 법문사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집	필	홍승기 교수(인하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기	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오영우, 김장호, 장석인, 장진숙
감	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최경수, 김찬동, 최혜민
발	행	2014년 11월
디자인 · 인쇄		전 디앤피(02-2272-1415)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